

***** 消 息 *****

- ★ 大宗會 總務를 多年間 맡아오던 都評議公派 元榮氏가 1989年 12月30日字로 辭退하고 後任에 翼元公派 泰春氏가 就任하였음.
- ★ 翼元公派에서는 別段公告와 如히 派譜刊行을 計劃中이오니 여러 宗親들 에게 緊密히 連絡하여 한분도 漏落되는 일이 없도록 積極 協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지난 2月17日 忠北 槐山郡 靑川面 宗親會 代表 26名이 觀光버스를 賃切 하여 大宗會를 訪問하고 歸路에 安養 文英公 先祖墓所과 淸州梧倉 按廉 使公先祖 墓所을 參拜하고 故家하셨습니다.
- ★ 忠北 槐山郡 東仁國民學校長으로 在職하시다가 退職하신 按廉使公派 英會 氏 長男 泰樹宗人이 釜山 東亞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하고 工學博士 學位를 取得하고 現在 東明專門大學 副教授로 在職中 입니다.
- ★ 忠北 槐山郡 曾坪邑 新洞居住 按廉使公派 成振宗人은 서울成均館 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한후 工學博士 學位를 取得하고 現在 慶北龜 尾 金烏工科大學 教授로 在職中 입니다.
- ★ 提學公派 英植宗人은 忠北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하고 工學博 士學位를 取得하여 現在 三涉工業專門大學 副教授로 在職하고 있습니다.
- ★ 提學公派 泰旭宗人은 延世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하고 醫學博 士學位를 取得하고 現在 群山에서 金泰旭 小兒科醫院을 經營하고 있습니다.
- ★ 現서울地檢 檢事長으로 在職하시던 提學公派 慶會宗親이 지난 3月23日附로 大邱高檢 檢事長으로 榮轉하였다.
- ★ 晋州出身 翼元公派 在庚宗親이 淸州地方檢察廳 檢事로 發令받고 轉補됨.
- ★ 지난 1989年 11月 5日 按廉使公派 享事日에 總會를 開催하고 다음과 같이 任員을 選出하였음.

會長	在華	淸州	副會長	章	會	文義
"	燦	會	梧倉	"	用	默
"	星	會	內板	監	事	泰
事務局長	在	一	梧倉			



安東金氏中始祖 忠烈公諱方慶尊影 (出則名將 入則名相)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崙會
 印刷人 金鳳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善口座: 010983-31-0513119
 私書函: 서울 淸涼郵遞局 137號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5,000원以上을 納 人한 宗親에게 無償配 付하오니 未拂込 宗親 께서는 꼭 納付 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正儀公派 臨時總會公告

正儀公派 臨時總會를 大宗會總會를 마치고 同日 同場所에서 任員改選과 其他 討議事項을 爲한 總會를 開催할것을 公告함.

正儀公派花樹會長 允會白

一九九〇年度 定期總會開催公告

一九九〇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無漏 參席하시기를 바라오며 別途 個別通知는 一切 省略하오니 諒知하시고 隣近宗親과 相互連絡하시와 많이 參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一、日時: 一九九〇年 四月二十八日 土曜日
 午前十一時 午後二時까지 (雨天不拘)

二、場所: 昌慶宮(旧昌慶苑內)
 交通便 地下鉄一號線 鍾路三街 下車
 市内버스便

三、附議案内
 1、一九八九年度 決算報告
 2、一九九〇年度 豫算審議
 3、任員改選에 對한 認准
 4 其他事項

四、參考事項 昌慶宮을 入場하여 總會場에 오시기 前에 大宗會에서 發行하는 入場券을 正門 앞에 서 案内員이 配付하오니 入場券을 받아가 지고 入場하시기 바랍니다 (個人 入場時는 入場料를 別途 五四〇원을 내시게 되오니 入場券 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五、會費: 七千원 (通常會費五、〇〇〇 包含)
 當日晝食과 記念品 提供

一九九〇年 三月 日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明會白

翼元公派 派譜刊行公告

지난해 十月七日 翼元公先祖 時享日에 決議한 派譜刊行에 對하여 그동안 數次에 亘한 理事會에 서 細部指針과 準備作業을 서둘러 오던바 다음과 같이 收單業務를 始作하였아오니 遺漏 없으시기를 바라오며 隣近宗親과 相互連絡 하셔서 宗中大 事業에 積極協助하여 주시기를 仰望하나다.

다 음

一、收單期限 西紀一九九〇年 六月三〇日限
 一、收單接受處 翼元公派 宗會事務室
 一、宗會事務室 서울 城東區 華陽洞 四一-一八 世運自動車學院內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

二、其他 詳細한 事項은 直接 問議바람
 西紀一九九〇年 一月 十五日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長 金吉成 白
 翼元公派派譜編纂委員長

自然의 攝理

포르른 저草木들 뿌리있어 살찌거나 비바람 몰아쳐도 뿌리있어 건디매라 뿌리없는 나무에 꽃피울수 있으리요

눈보라 휘날리면 뿌리얼까 두렵던가 잎사귀 떨어져서 뿌리위를 덮는고야 사람의 슬기롭이草木만도 못할건가

새봄에 새싹들아 꽃피워 열매맺으려 나엽이 썩고씩어 밀거름 되는고야 天理는 神秘로워 大自然의 攝理로다

(編輯室)

預(豫)金殘高明細書

951434

財產明細

安東金氏大宗會

계좌번호	26-26-20749-1
종 목	간지 6월호
성 명	안동김씨 대종회 김명희
주민등록번호	230408-1047812

인	감	개	인
인인인			김인

89년 04월 10일

한국투자신탁

일 ①



清涼里支店 支店長代理

林然

不動產明細

(財產目錄) 地地建物位土林野

*1,550,000	*714	*1,197,088
*1,229,588T	*4,760	*1,085,912
*530,000		*1,732,909
*478,452		*1,564,364
*1,200,000		*2,935,318
*1,081,783		*2,646,147
*1,852,000	*3,019	*1,086,658
*1,669,804T	*2,850	*976,543

地目	所在地	地番	坪數	用途	名義	備考
空地	外灘東大門已徵慶洞 112-49		112坪	會館空地	安東金氏宗親會大會	1978.8.26 登記
建物	"		301坪	會館	"	"
空地	外灘城東馬場洞 566-36		29坪	2宅	代表金壽五	1972.6.26 登記
"	慶北安東郡稷林面竹松洞 330-2		438坪	代表金壽五	"	1971.1.18 登記
"	"		135坪	代表金壽五	"	"
"	"		84坪	代表金壽五	"	"
"	"		66坪	"	"	"
"	"		65坪	"	"	"
林野	"		321坪	神主御教地	稷林面竹松洞大會	登記
當	"		740坪	代表金壽五	"	"
"	"		254坪	"	"	"
"	"		253坪	"	"	"
"	"		257坪	"	"	"
"	"		84坪	"	"	"
田	"		79坪	"	"	"
"	"		85坪	"	"	"
"	"		344坪	"	"	"
當	"		163坪	"	"	"
"	"		498坪	"	"	"
"	"		737坪	"	"	"
田	"		73坪	"	"	"
林野	"		7坪	"	"	"
"	"		154坪	"	"	"

MEMO 26-26-20749-1

일 ① 凡例 일=一般. 장=장학.

會館內各店舖賃貸料明細書

1989. 4. 1
1990. 3. 31

층 별	평수	점포명	성명	보증금	임대료	부가가치세	총합계
지하실	63평	한국계책소	김금복	2,500,000	590,000	59,000	649,000
1층	13평	하마분식	박준영	2,500,000	210,000	21,000	231,000
"	10평	프랑스제과	김태근	3,000,000	201,000	20,100	221,000
"	10평	중앙약국	원종구	3,500,000	191,000	19,100	210,100
"	15평	안동상회	김재현	2,500,000	279,000	27,900	306,900
"	16평	금융식당	유금호	6,000,000	324,000	32,400	356,400
2층	30평	안동다방	정명숙	7,000,000	393,000	39,300	432,300
"	12평	안국화재	이행수	1,500,000	143,000	14,300	157,300
"	13평	대우상사	이성수	3,000,000	181,000	18,100	199,100
3층	60평	유니하우스	김배곤	8,000,000	578,000	57,800	635,800
合計計	242평	10개업체		39,500,000	3,090,000	309,000	3,399,000

● 建物 ●

安東郡 祿田面 竹松洞	飲水齋	既存
"	影幀閣	1983年 新築
"	齋室	1984年 新築
安東郡 豊山邑 檜谷洞	遺墟碑閣	1985年 新築(重建)
"	齋室	1984年 重修
"	山直舍	1990年 新築

訃告

按廉使公派 前會長 在晚氏께서 宿患으로 지난 三月十七日(陰二月十一日) 京畿道 果川市 中央洞 自宅에서 享年 八十六歲로 別世.

按廉使公派 前監事 思永氏께서 宿患으로 지난 三月十二日(陰二月十六日) 建國大學校附屬民衆病院에서 別世.

司諫公(諱顯)壇享祭

司諫公諱顯先祖壇享祭를 다음과 같이 奉行 하오니 많은 參禮를 바랍니다.

一、日 時... 一九九〇年 四月一〇日
 一、場 所... 慶南山清郡 生草面 月谷里
 一九九〇年 三月 日

安東金氏山清宗約所
 所長 金相宜 白
 提學公派宗親會座前

安東金氏大宗會顧問
 翼元公派宗親會 會長

世運自動車學院

學院長 金吉成

서울·城東區 華陽洞 41-18

電話：(事) 463-2233

(自) 415-1148

년월일	취급번호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고좌수(금액)		평가금액	집
		지속(복표)금액	계좌번호	잔액	잔액	잔고좌수	잔고좌수		
				*10,000,000	26-09-57118-3 JA	1년	개월	반기말 89. 2.26	26-97-14096-8
								THANK YOU	인감
880226	26 C			*10,000,000		*9,559,042		*10,000,000	인감
880916	26 I	(JAE-TU-JA)		*1,012,032		*10,571,074		*10,571,074	안동김씨대중회 김명희
890417	26	JANGO JEUNG-MYUNG	890331						230408-1047812
890916	26 I	(JAE-TU-JA)		*1,270,181		*11,841,255		*11,841,255	인감
900221	26 W			*3,450,000	F	*0		*9,016,556	인감
900228	26 W			*4,600,000	F	*0		*4,436,272	인감
900305	26 W			*4,000,000	F	*0		*443,213	인감

일 ②

1988년 02월 26일

한국투자신탁

청량리지점 726

일 ②

일	자	취급번호	지	요	반환금액	반환좌수	수수료	매매기준가	평가금액	잔고좌수	점
870916	26 I				*2,996,678	채부자		1,000.00	*31,564,570		26-09-55634-1
880916	26 I				*3,341,755	JAE-TU-JA			*34,906,325		안동김씨대중회 김명희
890417	26					JANGO JEUNGMYUNG	89.03.31	1 MAE	*34,906,325		*28,567,892
890916	26 I				*4,194,138	채부자			*39,100,463		*30,000,000
900324	26 W				*1,100,000			*221,300	*40,744,934		1988년 3월 11일
900330	26 W				*2,200,000			*290,710	*37,872,318		이익분배금
900330	26 W				*2,309,934				*38,345,497		채부자
900330	26 W				*2,309,934				*35,562,384		이회사는 수익증권지속약관에 따라 위와같이 약정합니다.
900526	26 C				*100,000	장 ①			*1,407,103		한국투자신탁 1987년 03월 11일
890713	26 C				*91,581				*1,288,626		일 ③
890713	26 C				*200,000				*1,629,758		안동김씨대중회 김명희
890713	26 C				*280,259				*1,468,885		주민등록번호 230408-1047812
890804	26 I				*173,372	채부자			*1,642,257		인감
900308	26 C				*530,000				*1,642,257		인감
900309	26 W				*491,817		*7,660		*2,324,659		인감
870328	26 W				*10		*9	1,068.96	*2,127,250		인감
870804	26 I				*1,510,715	채부자			*1,787,872		인감
880804	26 I				*1,676,156	JAE-TU-JA			*1,635,433		인감
890417	26					JANGO JEUNGMYUNG	89.03.31	1 MAE	*15,184,557		인감
890804	26 I				*2,052,438	채부자			*15,205,075		인감
900330	26 W				*1,000		*190		*15,715,790		인감
880804	26 I				*1,676,156	JAE-TU-JA			*17,391,946		인감
890417	26					JANGO JEUNGMYUNG	89.03.31	1 MAE	*17,391,946		인감
890804	26 I				*2,052,438	채부자			*15,184,557		인감
900330	26 W				*1,000		*190		*14,205,075		인감
900330	26 W				*1,080		*190		*15,715,790		인감
900330	26 W				*1,080		*190		*17,391,946		인감
900330	26 W				*1,080		*190		*17,391,946		인감
900330	26 W				*1,080		*190		*17,391,946		인감

292430

26-09-55634-1
안동김씨대중회 김명희
주민등록번호 230408-1047812
*28,567,892
과화인
*30,000,000 원정/지속기간 /년월

1988년 3월 11일
이익분배금
채부자
이회사는 수익증권지속약관에 따라 위와같이 약정합니다.
한국투자신탁 1987년 03월 11일
일 ③

계좌번호 26-12-04045-3
종목 장 ①
성명 안동김씨대중회 김명희
주민등록번호 230408-1047812
과화인
인감

일 자 880804
취급번호 JAE-TU-JA
반환금액 *6,824,499
반환좌수 *6,824,499
26 I
890417 MYUNG 89.03.31 1 MAE
26
890804 채부자 *7,629,877
26 I 장 ③ *7,629,877
900330 *1,000 *8,406,706
26 W *1,080 *190 *7,628,797

26-12-50868-7
안동김씨대중회 김명희
주민등록번호
*6,166,779
장 ③
*6,377,251 원정
년월일 이익분배금
개인

<p>按廉使公派</p> <p>서울·銅雀區 本洞 八二一五</p> <p>金在鎭</p>	<p>翼元公派</p> <p>서울·鍾路區 八判洞 七〇八/七</p> <p>金在崙</p>	<p>都評議公派</p> <p>金昌信</p> <p>서울·西大門區 忠正路 3街 30-6</p>	<p>提學公派</p> <p>金俊會</p> <p>서울·恩平區 佛光洞 172-17</p>
---	--	--	---

戶主制 및 同姓禁婚法폐지 주장에 대한 反對

大韓儒道會 總本部 事務總長 李 完 熙

바로 이 구심점이 호주인 것입니다. 群生하는 鳥類나 풀벌, 개미등 곤충까지도 반드시 리더가 있고 國家에는 원수와 선수단에게까지 주장이 있는데 하물며 가족을 통할하는 호주가 없다면은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도 호주가제가 폐지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려면 戶主制 폐지를 주장하는 모든 단체나 그들이 관계하는 조직에서부터 代表制度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대표자가 없는 관계 그리고 그 조직을 생각해 봅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조직에 장이 있다고 해서 총조직원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조직원의 권리와 의무에 차별이 생기는 것 아니듯이 호주제도가 민주역행이라는 것은 語不成說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三) 戶主는 核家族으로 존재가치가 없고 가족부양의무를 이행치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 子息을 위해 헌신한 父母를 두고 노후에 부양의무를 운운하는 것은 불염지한 발상이다. —

서양문명의 유입에 편승하여 우리사회에 核家族制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核家族이란 婚姻한 후 夫婦中心으로만 생활하자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소가족인 것입니다. 부모와의 동거와 그 봉양을 根本的으로 거부하며 출생한 子息에 대한 애정과 訓育도 우리의 것과 本質이 판이한 것입니다. 자식있는 老父母가 養老院에 入住하거나 公園의 휴식처에서 고독하게 소일하는 西歐의 社會相은 核家族制의 一面을 說明하고 있습니다.

이 核家族制는 夫婦間의 禮節과 순박한 애정은 결여되고 本能的·肉体的 애정만을 증시해 우리의 孝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의학자는 이 核家族를 評하기를 우리나라 個別 家族制度가 정신보건 훨씬 위에 있다고 합니다. 즉 核家族에는 소외감과 감각을 더 느끼며 정서적 支柱가 없고 責任이 오히려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노이로제 患者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핵가족에서는 부부의 性格에도 원만한 缺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부부분열과 자녀들의 인격장애·정서불안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족구성원이 단출하기 때문에 못한 사람은 못한대로, 偏狹한 사람은 偏狹한대로 順化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강조되어 表出된다 합니다.

20世紀의 碩學인 아놀드토인비 교수는 「우리는 3대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한국의 理想的인 가족제도와 같은 제도를 19세기부터 잃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가족제도가 人類를 위하여 가장 훌륭한 제도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고독은 인간에게 가혹한 처벌입니다. 내 자신도 외로워서 못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같이 子息과 함께 한집에서 살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제도를 西洋에 다 반드시 가르쳐 주시오.」라고 우리의 가족제도를 칭찬하였습니다.

傳統的인 우리 가족제도가 화합단결하고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안정된 생활을 享有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두고 核家族制度를 위해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實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호주가 병들거나 노쇠하여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되므로 호주가 왜 필요하냐고 야박한 主張을 합니다. 이들 지칭하는 호주는 대략 늙으신 조부나 부친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야말로 어느 가정이나 不拘하고 갖은 酷毒한 苦痛과 惡條件을 克服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家統을 세워놓은 분들이며 노쇠하여 家族봉양의무를 이행치 못한다 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잠으로 言語道斷입니다. 그러나 호주가 와병, 기타 事故로 인하여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그 대행자를 選任하고 본인이 選任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가 호주를 선임할 수 있도록 民法에 規定되어 있음으로 前述과 같은 주장은 前後가 뒤바뀐 말이라 하겠습니다.

(四) 戶主制가 日本의 天皇制度를 기저로 發生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

— 日本文化는 우리가 전래한 것으로 모방은 이해부족에서 나온 모자라는 식견이다. —

日本의 정신문화 및 國家制度는 한국으로부터 傳來된 한국문화와 제도의 分派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 本質이 韓國文化와 同質이라고 하는 것은 定說로 되어 있습니다. 三韓時代로부터 三國時代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해협을 건너갔다는 것은 말

할 나위도 없거니와 역사에 뚜렷이 나타난 바로는 四世紀初에 王仁박사가 천자문과 論語를 4세기말인 西紀 3백90년에 沸流백제가 고구려의 廣開土大王의 침공으로 대거 日本의 北九州로 移居하였다가 곧 다시 일본의 奈良로 본거를 삼아 奈良朝를 建設하였습니다. 六世紀에 溫祚百濟聖王代에 佛敎가 日本國에 7세기초에 大和朝廷이란 國家建設에 한국이 전력을 경주한 점, 16세기 말엽 임진왜란때 한국의 儒敎經典 및 技工人들이 日本에 건너가서 日本의 文化形成과 발전에 主流를 이루었으므로 일본의 가족제도가 우리의 가족제도에 영향을 받아 발전된 것인데 현행 法條文에 利用된 것과 그 형식만을 보고 모방한 것이라고 하며 또 中國의 족조적인 宗法制로부터 由來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研究와 察之未盡이라는 評을 모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同姓同本禁婚에 대하여

다음은 同姓同本禁婚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家族制度에 있어서 家庭은 혈연적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이 血緣的 共同体가 장구한 기간 계속하여 오면서 親族觀이란 哲學的 가치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卽 百代至親이라는 觀念으로 동성동본의 친족간에는 恣의의 如何를 막론하고 일가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同姓同本 不婚制는 祖上崇拜思想과 親族觀의 結合으로 이루어진 制度로서 婚姻은 타인과 타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本質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고로 恣의의 遠近을 不問하고 친족간의 性的 交接을 相避라 하여 禁忌로 삼아 왔습니다. 原始時代의 亂婚으로부터 新羅時代의 聖骨間·眞骨의, 高麗時代의 王族間·遺族間의 近親婚을 止揚하고 性道德을 확립하여 社會의 倫理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同姓同本 不婚制가 확립된 것입니다.

同姓同本禁婚法폐지 論者들의 主張을 반박한다

— 同姓同本許婚은 近親婚을 漫연시켜 性道德의 문란을 초래한다. —

同姓同本間의 결혼을 全面的으로 許容하자는 것이 아니고 血族 八村까지만 禁止하고 그 이상의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許容해야 한다는 主張입니다. 이와같이 8촌을 制限線으로 한다는 것은 喪服制의 恣의에 盲從하였을뿐 優生學的으로 근거이유가 없음을 단언합니다.

男妹는 父母가 같기 때문에 血統이 동일하지만 3촌, 4촌 부녀모자간은 1/2 만이 同質이고 5촌, 6촌은 1/4 만이 同質이고 8촌은 1/8, 10촌은 1/16, 12촌은 1/32 등으로 恣의가 멀수록 血統의 同質性을 主張하는 것은 無意味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동본간에 金婚해야 하는 이유는 血統의 同質性이 아니고 種統, 곧 씨가 問題인 것입니다.

人間生成에 있어서 남녀의 性別이 남성에 의해 決定됨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씨로 자녀가 생기고 어머니는 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어머니의 발이 어떤가에 따라 콩이나 팥이 영그는데는 영향이 있지만 발의 조건때문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씨는 남자에게로만 흐르기 때문에 事實 百代를 傳한다 하더라도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촌인 男妹는 말할 것도 없지만 恣의를 헤아릴 수 없는 사이라도 동성동본이면 같은 씨에 의해 발생한 生命이기 때문에 種統上으로는 男妹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같은 씨에 의해 生成된 同種끼리는 配接할 수 없다는 것이 동성동본 결혼의 부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恣의를 모르는 靑少年들은 9촌 이외의 결혼을 許容한다고 하면 곧 친족간이 許容되었다고 오인하고 8촌이라는 制限線은 즉시 허물어져서 近親婚을 許容한 結果가 되고 말것입니다. 걸잡을 수 없는 近親婚 慣行時代가 되고 말것이며 또 9촌 이외의 결혼여부는 혼인당사자도 恣의를 몰라서 判定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婚姻申告書가 提出되었을때 恣의公務員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혼의 敵法여부를 단정하며 恣의적에 어떻게 적법여부를 기록할 것인지 施行上 不可能하므로써 近親婚이 만연된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大司成公派 金在吉 慶州市拜洞 一七二(포석)	按廉使公派 金元會 忠北槐山郡 靑川面 三鶴里	翼元公派 金南會 全南羅州郡 旺谷面 長山里	提學公派 金道應 忠南天原郡 東面 長松里 一七〇	都評議公派 金潤秀 慶北義城郡 點谷面 鳴고동	都評議公派 金浩達 慶北義城郡 點谷面 沙村洞	都評議公派 金銀月 慶北義城郡 玉山面 亭子洞	光明市鐵山洞 住公아파트 一三〇一七〇四	提學公派 金金仲三奎奎
-------------------------------	-------------------------------	------------------------------	---------------------------------	-------------------------------	-------------------------------	-------------------------------	----------------------	----------------

12. 嗣孫과 祀孫

嗣孫이란 한 집안의 系代를 잇는 子孫을 일컫는 말이며 祀孫이란 奉祀孫의 尊號로서 嗣孫이 祭祀를 奉行하지 못하는 境遇에 祖上의 祭祀를 맡아 받드는 子孫을 일컫는 말이다.

13. 奉祀

奉祀란 奉祭祀의 尊號로서 祖上의 祭祀를 奉享한다는 뜻이다.

14. 親盡

親盡이란 祭祀를 받드는 代의 數가 다했다는 뜻이다. 四代奉祀를 行하는 家門의 境遇 五代祖 以上の 祖上을 親盡 또는 代盡이라고 하는데 親盡된 祖上의 神主는 무덤앞에 埋安하며 歲祭를 奉享한다.

15. 後嗣와 養子

後嗣란 代를 잇는다는 後承의 뜻으로서 系代를 잇는 子孫을 일컫는 말이며 養子란 後嗣가 없을 境遇에 代를 잇기 위하여 同行列 同族中の 몸에서 出生한 者를 入后하는 것으로서 이를 系子라고도 하는데 養子에는 다음과 같은 區分이 있다.

- 가. 收養子 3歲以前에 入養하는 養子
- 나. 侍養子 3歲以後에 入養하는 養子
- 다. 死後養子 養父母가 俱歿한 後에 入后하는 養子
- 라. 白骨養子(神主養子) 養子自身이 죽은 後에 入后한 養子

16. 庶孽과 承嫡

庶孽이란 禮를 갖추지 않고 娶한 몸에서 出生한 子孫을 일컫는 말이며 承嫡이란 庶孽이 嫡子孫으로 됨을 일컫는 말이다.

17. 世와 代

世란 것은 例컨데 祖, 父, 己, 子, 孫을 系列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代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年間을 1代로 잡는 時間的 空間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父子間이 世로는 2世이지만 代로는 1代 即 30年間의 歲月이 한번 經過하였다는 뜻이며 祖孫間의 世로는 3世이나 代로는 2代가 되는것 亦是 30年間의 歲月이 두번 經過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例컨데 祖孫間이 世로는 3世이지만 代로는 2代가 되는것 亦是 30年間의 歲月이 두번 經過하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先祖로부터 아래로 後孫을 가리킬 때에는 世를 붙여서 例컨데 始祖를 一世, 그 아들을 二世, 그 孫子는 三世라 일컬으며 그와 反對로 先祖를 말할 때에는 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後孫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世孫 그와 反對로 先祖를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代祖라 일컫는다.

18. 系寸과 計寸

系寸이라 함은 父子는 一寸이고 祖孫은 二寸間임을 規定孫間이나 叔住間은 三寸間임을 規定한 系寸法이며 計寸이란 同族間에 있어 相對方과의 寸數를 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19. 寸數計算方法

寸數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사람이 同行에서 함께 該當되는 同一 直系祖를 찾아서 그 直系祖로부터 30年間의 1代가 몇번 經過하였는가를 計算한다. 가령 寸數를 가리려는 同行列의 두사람에 高祖가 同一 直系祖라면 그 直系祖에 이르기까지 두사람이 모두 4代를 경과한 直系後孫들이다. 그러므로 4代에다 두사람의 員數인 2를 곱셈한다. 4代×2=8寸間(同高祖八寸)이다.

만약 同行列이 아닐 때에는 行列이 높은 사람을 基準으로 同行列間의 寸數를 計算해낸 다음 거기에서 行列의 差等數를 加算한다. 例컨데 同行列로 計算해낸 것이 10寸間인데 두 사람의 行列差等數가 3인 경우에는 10寸에다 行列의 差等數인 3을 加算하면 13寸間의 族曾祖孫間이 되는 것이다.

20. 銜字와 諱字

우리가 윗어른을 말할때에 있어서 生存者 이름의 높임말은 銜字(함

자)라고 하며 非生存者 이름의 높임말은 諱字(휘자)라고 한다.

21. 諱號와 私諱

諱號란 先王의 功德을 稱頌하여 붙이거나 文武官中 實職이 正二品 以上の 卿相이 죽으면 그의 行績을 稱頌하여 임금의 追贈하는 이름인데 이 制度가 뒤에는 賢臣 名儒節臣에까지 擴大適用 되었다. 그리고 私諱란 地位가 낮아서 諱號의 恩典이 미치지 못하는 境遇學行이 높은 선비에게 그 일가나 故鄉의 親知 또는 弟子들이 올리는 諱號를 일컫는 말이다.

22. 行職과 守職

行職이라 함은 官員의 官職이 品階와 相等하거나 品階보다 任職이 앞을 때에는 이를 行職이라 하는데 그 職銜앞에는 「行」字를 붙인다. 그리고 官員의 品階보다 官職이 높은 境遇에는 이를 守職이라 하는데 그 職銜 앞에는 「守」字를 붙인다.

23. 影職과 贈職

影職이란 例컨데 中樞府와 같이 實際로 勤務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빌리는 벼슬이기 때문에 이를 借銜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贈職이란 宗親(王族)이나 從 2品以上 官員의 父祖曾祖 또는 忠臣 孝子 或은 學行이 高蓮한 사람에게 死後에 官職과 品階를 追贈하는 벼슬이다.

24. 妃匹

妃匹이라 함은 配匹 즉 配位라는 뜻이다. 이를 譜牒上에는 「配」字만으로써 表示하는데 門中에 따라 生存者에 대해서는 室人이라는 「室」字만을 表示하고 非生存者에게만 「配」字로서 表示하는 家門도 있다.

25. 生과 卒

모든 譜牒에는 出生年月日과 死亡年月日을 表示하기 마련인데 出生은 「生」字만을 表示하며 死亡은 「卒」字만으로써 表示하는 것이 通例다.

26. 享年과 享壽

享年이란 사람의 한平生을 누린 年輪을 일컫는 말이다. 七十歲 未滿에 死亡한 境遇에는 享年 몇十몇이라 表示하며, 七十歲 以上の 年輪을 누린 사람에게 대해서는 壽몇十몇이라 表示한다.

27. 丘墓

丘墓란 墳墓(무덤)을 말하며 譜牒上에는 「墓」字만을 表示하고 그 所在地와 坐向 石物 등을 表示하며 配位와의 合葬與否도 밝히는 것이 通例다.

28. 儒生과 幼學

儒生이란 成均館이나 四學 또는 鄉校에서 修學하는 선비를 말하고 幼學이란 生員과 進士를 選拔하는 小科에도 合格되지 아니한 白頭의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29. 後學과 山林

後學이란 後輩라는 뜻으로 儒賢의 學風을 따르는 學者가 自身을 일컫는 謙稱이며 山林이란 山林處士의 尊號로서 學德이 崇高하되 벼슬을 外面하고 隱居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30. 修單과 收單

修單이란 單子를 整備한다는 뜻으로 族譜를 編纂할 수 있도록 直系血族의 名諱字와 事蹟을 系代에 맞추어서 整理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收單이란 말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單子를 거둬 모으는 즉 蒐集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名下錢은 收單金이 아니라 修單金이라 하며 接受期間은 修單마감이 아니라 收單마감이란 한다.

31. 庶文과 跋文

庶文이란 머리말로서 譜牒의 庶文이라면 대개 尊祖精神을 鼓吹함과 아울러 譜牒刊行의 緊要性을 強調하고 陸族意識을 啓導하는 것이 通例이다. 그리고 跋文이란 現代語로 編輯後記에 該當되는 것이므로 譜牒의 編纂과 刊行所感을 披瀝하는 것이다. 泰春記

이 原稿는 張鴻根著書 中에서 極히 必要한 部分만 拔萃되었음.

通常會費引上公告

지난 12月16日에 開催한 各派會長 및 全國理事·運營委員 連席會議에서 大宗會報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고 날로 올라가는 物價高에 對峙할 一環으로 通常會費의 引上을 다음과 같이 滿場一致로 可決하였으니 送金에 萬遺漏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決議事項
- 1、年間 通常會費 二千元 以上을 五千元 以上으로 引上 徵收하되 一九九〇年度 부터 이를 施行한다.

原稿募集

本 大宗會에서는 數年間 會報를 發刊하여 왔으나 宗親 相互間에 崇祖陸族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全國 各處에 居住하시는 宗親들의 玉稿를 歡迎해 왔으나 전히 投稿하여 주시지 않으셔서 弘報하는데 애로가 있어오니 協助하여 주시는 見地에서 다음 要領과 같이 作成 送付하여 주시면 이를 採擇 登載하여 全宗人의 龜鑑이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 一、論文要領 崇祖陸族과 倫理道德에 寄與되는 內容
- 一、各派宗中 및 宗親會에서의 行事와 이에 對한 經過記事
- 一、宗親中에서 있었던 善行、美談佳話 또는 孝子、孝婦
- 一、各界에 進出하고 있는 宗親의 昇進 轉補 事項
- 一、先祖에 關係되는 傳說
- 一、其他 宗親들에게 公示事項

按廉使公派

金在均

汝矣島 香田衣園

譜學研究

譜牒의 述語

族譜의 超源

13世紀 高麗末葉부터 族譜가 始作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오늘에 傳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單只 士大夫집 家乘이 마련되어 오다가 가장 體系를 갖춘 族譜는 14世紀 後半인 成宗 7年(西紀 1476年)에 비로소 安東權氏의 成化譜가 印刊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며 그후 明宗 20年(西紀 1565年)에는 文化柳氏의 嘉靖譜가 刊行되었다. 그 당시에는 子女의 差別없이 年令順으로 收錄하였으며 親孫과 外孫을 同等하게 다룬 것이 特異하다.

族譜의 意義

1. 한 家門의 政治史요 生活史이다.
2. 血統의 實證과 血族與否의 判斷
3. 昭穆의 序列 및 寸數의 分揀
4. 尊祖敬宗 精神의 昂揚
5. 血族間 和睦團結의 強化

族譜의 種類

1. 家乘
家乘의 乘은 史記乘字로서 한 國家의 史記를 國乘이라 하거니와 家乘이란 한 家門의 史記라는 뜻이다. 自己를 中心으로 해서 直系尊屬과 直系卑屬에 對한 世系를 體系의 事蹟을 갖추어 記錄한 文獻이다.
2. 派譜
어느 一派에 대한 譜牒으로서 始祖로부터 派屬 全体를 收錄한 譜牒이다.
3. 世譜
한 地域에 居住하는 一派 또는 各派屬들이 한데 어울려 合同으로 編纂한 것을 世譜라고 하는데 世誌라는 말도 이와같은 것이며 派譜라는 말 대신에 世譜라 하기도 한다.
4. 族譜
貫鄉을 單位로 같은 氏族의 全体를 收錄한 譜牒으로서 한 家門의 歷史를 表示하고 家系의 連續을 實證하는 文獻인데 모든 譜牒의 代名詞로 쓰이기도 한다.
5. 大同譜
같은 鼻祖아래 分籍된 始貫祖마다 各己 다른 貫鄉을 가지고 있는 血族間에 同譜로써 綜合編纂한 譜牒을 일컫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비록 貫鄉은 各各 다를지라도 鼻祖가 同一한 血族들이 同譜로 編纂된 譜牒을 일컫는 말이다.
6. 系譜
한 家門의 血統關係를 表示하기 위하여 名, 諱字만을 系統의 系統으로 나타낸 圖表로서 한 氏族 全体가 收錄되었거나 어느 한 部分만이 表示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系譜에 屬하는 것이다.
7. 家譜 家牒
家譜나 家牒이란 말은 그 編纂된 形態의 表現이 아니라 各自 집안에 所藏되어 있는 譜牒이란 것을 일컫는 말이다.
8. 縱譜와 橫間譜
譜牒을 編纂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두가지의 種類가 있다. 그 하나는 行用 族譜라고 일컫는 縱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橫間譜인데 이를 間譜 또는 段譜라고도 일컫는다.

1. 始祖와 中始祖
始祖란 한 家門의 始初로써 初代 即 第一世 先祖로서 첫번째 祖上이다. 그리고 始祖 以後에 衰退한 家門을 中興시킨 祖上을 中始祖 또는 中祖로 追尊하는 것인데 이는 온 門中의 公議로써 設定하는 것이며 어느 一派의 單獨의 主張으로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2. 本貫과 貫籍
本貫이란 始祖 或은 中始祖의 出身地 또는 氏族의 世居地를 根據로 設定하는 것으로서 本貫을 鄉籍이라고도 하였으니 이를테면 始祖나 氏族의 故鄉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貫鄉 또는 本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同姓이라 할지라도 同族與否를 가능하는데는 本貫이 매우 重要한 것이다. 그리고 貫籍이란 氏族의 本籍地란 뜻으로서 本貫대신에 貫籍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3. 分貫과 分籍
後裔中의 어느 一部가 다른 地方에 移住해서 오랜동안 살다가 그 地方을 根據로 貫籍을 새로이 創設하게될 境遇 自動的으로 分貫이 發生하게 되는데 이를 分貫 또는 分籍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設定된 始祖를 始貫祖라 일컫는다.
4. 賜貫과 賜姓
옛날에는 功臣이나 酷化人에게 賞의 表示로 本貫이나 姓氏 或은 이름까지도 國王으로부터 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賜貫이나 賜姓 또는 賜名이라 일컫는다. 이는 三國時代 初부터 있었으나 特히 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많았다.
5. 宗派와 派屬
中始祖가 定해짐으로서 宗派가 成立되는 것인데 宗派나 派屬을 밝히는 것은 後裔들 各自의 血統的 系列을 分明히 하여 寸數를 明確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設或 譜牒에 대한 關心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自身의 派屬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家門을 中興시킨 中始祖의 職銜이나 諡號 또는 雅號 밑에 公字를 붙여서 表示하는 것이 通例이다. 間或 門中에 따라서는 一派, 二派, 三派로 表示하는 例도 있다.
6. 京派와 鄉派
門中에 따라 同一한 宗派間에도 이를 超越하여 京派와 鄉派의 二系統으로 區分하는 境遇가 있는데 이는 글字 그대로 京派란 서울에 살면서 代代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鄉派란 시골에서 世居해온 一族을 가리키는 말이다.
7. 先系와 世系
先系란 始祖以前의 祖上을 통털어 일컫는 말이며 世系란 始祖로부터 代代로 이어온 系統의 차례 곧 家系를 일컫는 말이다.
8. 先代와 末孫
본래 先代란 先祖의 여러 代를 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나 譜學上의 先代란 始祖以後 上系의 祖上을 總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後代 즉 下系의 裔孫들을 末孫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譜牒의 部分을 孫錄이라 한다.
9. 傍祖와 族祖
傍祖란 六代祖 以上の 그 兄弟를 일컫는 말이며 族祖란 傍祖以外의 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10. 四祖와 顯祖
四祖란 內外四祖의 尊號로서 父, 祖, 曾祖 및 外祖의 總稱이며 顯祖란 名聲이 높고 드러난 名祖上을 일컫는 말이다.
11. 宗孫과 長孫
宗孫이란 宗家의 男子孫을 일컫는 말이며 長孫이란 宗家가 아닌 次子孫의 큰孫子를 일컫는 말이다.

동원산업(주) 社長

金在哲(郡事公派)

동원참치

동원산업(주) 창원공장 참치: 라이트스탠다드, 국내유일 KS 획득, 총재 26호

라이트솔리드 동원참치캔

DONGWON TUNA LIGHT STANDARD

동원참치캔

라이트스탠다드 동원참치캔

동원산업(주) 창원공장 참치: 라이트스탠다드, 국내유일 KS 획득, 총재 26호

삼별초

(18)

(전호에서 계속)

박천수가 진도에 도착하자 삼별초의 지휘자들은 비파정(碧波亭)에 장막을 치고 이를 맞(嚴守安) 등이 줄지어 당도하리라는 큰 진지를 베풀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영은 한낱 장난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틈을 파고 삼전원(三堅院)을 습격하여 변신(二심)의 척과하고 배한적을 탈취해서 돌아갔다. 그리고 배중순은 박천수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조서에 대한 회답을 완성해 거부하면서

「이러한 종이쪽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니 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 물리쳤고, 왕명에 대한 전담의 회답을 요구해도 배중순은 「알았다고 전하라」는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경상도 밀성군(密城郡)·密陽 사람 방보(方浦)·계연(桂年)·박평(朴平)·박공(朴公)·박경순(朴慶純)·정기(慶祺) 등이 무리를 불러 모으자 고을 사람들은 장차 진도의 삼별초와 합세하여 한다 하였다. 그들은 부사(副使) 이원(李願)을 죽이고 드디어는 공국병마사(政國兵馬使) 라칭하여 각 주현(州縣)에 이첩(移牒)하고는 그 무리를 파견하여 청도감부(淸道監務) 임종(林宗)·홍은(崔良梓)이라고도 함을 죽이자 청도(淸道)군 사람 들은 거지로 항복하고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때 밀성사 람조전(趙顯)은 일선(善)·善(善)·현령으로 있었으나 적도들 에 종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으나 청도의 무리가 모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손일(孫逸)과 더불어 적의 두목을 죽이려 하였다. 이때 안렴사 이오(李敖

군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기를 더 높여 돌진하니 진도의 앞마다는 천지가 진동하고 양군의 화살은 소낙비처럼 쏟아 지는데 아침부터 시작된 싸움 은 실재없이 저녁까지 계속 되었다. 점점 해가 수평선으로 기울고 온 바다가 금빛과도로는 이부서고려군은 매우 불리한 형편에 처했다. 반짝이는 파도에 눈이 부서 적의 행동을 바로 볼수 없는 반면에 이를 등진적은 오히려 유리하게 관망할수 있었고 바람마저 차갑고 거세어지니 이때 김방경은 다 시 힘을 내어 호령하였다.

「자! 모두 들어라! 결전은 이제 눈앞에 있다. 앞으로 돌진하라!」

호령이 떨어지자 사졸들은 사기를 되찾아 일제히 돌진하였 다. 그러나 이를 본 적의 배들 은 쾌속으로 돌진하여 재빨리 포위하고 김방경의 탄배를 갈퀴로 찍어 걸어서 끌고가기 시작했다. 이를 본 사졸들은 죽음을 싸우려 했으나 화살은 이미 떨어지고 배안에는 전사자의 시체와 부상자만이 뒤둥 굴고 있는 데 날은 이미 어두워 졌고 배는 벌써 진도의 해안가 가까이 끌려갔다.

이때 해안에서 기다리던 적졸 하나가 큰칼을 휘두르며 비호장이 뛰어들어 배에 올라 하늘이 휘어지고 배에 오러 하는 데 대마침장군 김천록(金天祿)이 짧은 창으로 재빨리 역습해 버렸다. 김천록의 재치로 위기를 면한 김방경은 다시 일어서면서

「내 차라리 고기의 발이 될 지언정 저놈들의 손에 죽지 는 않으리라」

하고 바다에 뛰어들려 하는데 마침 호위사(護衛士) 허송연(許松延)과 허만지(許萬之)가 의지로 만류해서 중지시켰다. 이 광경을 본 사졸들의 힘은 다 시 솟음을 잃고 있어지고 넘어 지면서도 큰소리로 적을 꾸짖 고 일제히 일어나서 총공격을 하니 적의 배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해 버렸다.

이러한 와중에도 한편에서

는 몽고군이 적명과 충돌하고 있는데 몽고군이 엄청난 위기를 빠져 있었다. 이때 장군 양동무(楊東茂)가 이를 발견하고 크게 외쳤다.

「저쪽의 몽고병을 도우라!」

양동무는 용감한 장군이었던 이부서고려군은 매우 불리한 리를 격돌하니 적병은 도망치고 그날의 전투는 끝났다. 형편에 처했다. 반짝이는 파도에 눈이 부서 적의 행동을 바로 볼수 없는 반면에 이를 등진적은 오히려 유리하게 관망할수 있었고 바람마저 차갑고 거세어지니 이때 김방경은 다 시 힘을 내어 호령하였다.

「자! 모두 들어라! 결전은 이제 눈앞에 있다. 앞으로 돌진하라!」

호령이 떨어지자 사졸들은 사기를 되찾아 일제히 돌진하였 다. 그러나 이를 본 적의 배들 은 쾌속으로 돌진하여 재빨리 포위하고 김방경의 탄배를 갈퀴로 찍어 걸어서 끌고가기 시작했다. 이를 본 사졸들은 죽음을 싸우려 했으나 화살은 이미 떨어지고 배안에는 전사자의 시체와 부상자만이 뒤둥 굴고 있는 데 날은 이미 어두워 졌고 배는 벌써 진도의 해안가 가까이 끌려갔다.

이때 해안에서 기다리던 적졸 하나가 큰칼을 휘두르며 비호장이 뛰어들어 배에 올라 하늘이 휘어지고 배에 오러 하는 데 대마침장군 김천록(金天祿)이 짧은 창으로 재빨리 역습해 버렸다. 김천록의 재치로 위기를 면한 김방경은 다시 일어서면서

「내 차라리 고기의 발이 될 지언정 저놈들의 손에 죽지 는 않으리라」

하고 바다에 뛰어들려 하는데 마침 호위사(護衛士) 허송연(許松延)과 허만지(許萬之)가 의지로 만류해서 중지시켰다. 이 광경을 본 사졸들의 힘은 다 시 솟음을 잃고 있어지고 넘어 지면서도 큰소리로 적을 꾸짖 고 일제히 일어나서 총공격을 하니 적의 배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해 버렸다.

이러한 와중에도 한편에서

통하면서 음모(陰謀)를 꾸미고 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아해는 절호의 기회를 노릴새라 즉시 김방경을 잡아두고 토역의 전과가 부진한 요인을 전가시켜 그 공훈을 독점하는 심중을 굳혀서 개경(開京)의 다루하찌에게 압된 다루하찌는 대국에서 노련 된 고위관리답게 이러한 중대사를 소홀히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방경과 사실을 고한 자를 함께 내게로 보내라. 그러 면 내가 마땅히 그들을 국문 하여 사실을 밝혀 처리하리 다」

다루하찌는 즉시 아해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냈고 이에 대해 아해는

「왕정(王京)의 일은 오로지 그대가 주관할 소관인 줄 알고 있으나 군려(軍旅)에서 생긴 일은 당연히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냐?」

하고 반문조의 답사를 보냈다. 이러한 답사는 하루하루로 하여금 크게 마음의 충동을 일으켰다.

「황제 폐하의 조지(詔旨)에 말씀하시기를 『군·민(軍民)에 관한 모든 사건은 우리들 두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셨거늘 그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어찌 그러한 사정을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하려 하는가? 도대체 그대는 성지(聖旨)에 복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강력한 다루하찌의 문책에 아해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해는 할수없이 홍찬·홍기의 두 원고자를 개경으로 보냈다. 이때 개경에 파견된 다루하찌는 도단(都單)이었다. 도단은 사람들이 원만하고 어 디까지나 권세보다는 오히려 모 든 사건에 공정을 기함을 신조(信條)로 삼는 사람이었다. 도 단은 우선 홍찬과 홍기에게 엄중한 질문을 하였다.

고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보라」

도단이 이렇게 추궁할 때 홍찬의 대답은 이구동성이었다.

「김방경 장군은 여러 차례 진도에 사람을 보내서 삼별초는 해산하고 돌아와서 함께 나라를 재건하자」고 적도 들을 설유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그들과 암암리에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도단은 이를 음모라고 단정짓지는 아니하고 다시 엄한 심문을 하자 원고들은 답변이 궁하게 되어 당황하기 시작했다. 도단은 이들은 투옥하고 김방경은 아무런 혐의 가 없으니 즉시 석방하라 하고는 이 사실을 세조에게 알리는 사자를 보냈다.

한편으로 다루하찌는 아해는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만 남의 나라의 내란을 진압하러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조에 불과하며 삼별초의 토벌쯤은 생각밖의 일이니 김방경의 비행을 날조해서 이를 참소하므로 해서 승산없는 전쟁터를 벗어나자는 암암한 생각이 도단의 단안후로부터는 싸움에 뜻이 없고 나주에서 유 흥만을 일삼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 삼별초는 이러한 시기에 대오를 정리하고 군기(軍紀)를 강화하여 사기충천하는 기세로 도약하고 있었다.

이때 해안에서 기다리던 적졸 하나가 큰칼을 휘두르며 비호장이 뛰어들어 배에 올라 하늘이 휘어지고 배에 오러 하는 데 대마침장군 김천록(金天祿)이 짧은 창으로 재빨리 역습해 버렸다. 김천록의 재치로 위기를 면한 김방경은 다시 일어서면서

「내 차라리 고기의 발이 될 지언정 저놈들의 손에 죽지 는 않으리라」

하고 바다에 뛰어들려 하는데 마침 호위사(護衛士) 허송연(許松延)과 허만지(許萬之)가 의지로 만류해서 중지시켰다. 이 광경을 본 사졸들의 힘은 다 시 솟음을 잃고 있어지고 넘어 지면서도 큰소리로 적을 꾸짖 고 일제히 일어나서 총공격을 하니 적의 배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해 버렸다.

이러한 와중에도 한편에서

삼별초는 이번호로 끝내고 다음호부터는 大宗中, 派宗中, 小宗中에서 행하는 爲先事業, 宗中會議, 篤志善行 등을 掲載합니다.



(元榮記)

- 各種 生花
- 꽃바구니
- 화환 · 화분



- 신속한 배달
- 저렴한 가격
- 宗親을 위한 特別奉仕

香田園芸

代表 金在均

주소: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 783-3166 ~ 7 (自) 552-5327